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임종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190

발의연월일: 2025. 4. 28.

발 의 자 : 임종득 • 김기웅 • 김형동

서일준 · 김예지 · 박수민

강선영 · 강대식 · 서천호

유용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과 훼손 방지를 위하여 그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.

산불이 발생한 경우 등 대규모의 재해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가 지정문화유산의 소실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는데,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의 문화유산의 현상 변경을 감수하더라도 선 제적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산불 등 재해·재난의 발생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국 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후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재난 발생으로 인한 국 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려는 것임(안 제35조).

법률 제 호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5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산불 등 재해·재난의 발생으로 국가 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주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 경우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조치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⑦ 국가유산청장은 제6항 전단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 한다.
- ⑧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	행		개 정 안
제35조(허가사항) (1 ~ 5) (생	제35조(허가사항) ① ~ ⑤ (현행
략)			과 같음)
<u><신 설></u>			⑥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
			<u>산불 등 재해·재난의 발생으</u>
			로 국가지정문화유산이 소실될
			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시ㆍ
			도지사 또는 시장・군수・구청
			장은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
			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
			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
			니하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
			<u>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</u>
			을 주는 조치를 할 수 있다. 이
			경우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
			군수·구청장은 지체 없이 해
			당 조치 결과를 국가유산청장
			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<u><신 설></u>			⑦ 국가유산청장은 제6항 전단
			에 따른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
			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여야
			<u>한다.</u>
<u><신 설></u>			⑧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
			6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

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